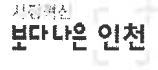




인천광역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택시 운행목적 이외 유류구매카드 사용 금지 안내

1.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인천광역시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4항, 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」 제22조제2항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점검을 통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.
3. 택시 운송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(가족여행, 고향방문 등)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부정수급 점검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대상 : 주유행태가 특이한 차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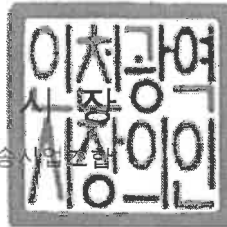
- 충전(주유)량 확인 : 지역평균거래량 2배 초과 충전 차량
- 충전(주유) 지역 확인 : 인천지역 이외 지방충전 차량

○ 부정수급 점검결과 의심차량에 대한 소명자료 : 미터기 운행기록

※ 손님을 태우고 택시 운행목적으로 지방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미터기 작동하고, 개인용도로 지방에서 충전(주유)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및 현금 사용

○ 행정처분 : 유가보조금 지급정지(1년 이내 1회 적발 시 6개월 / 2회 적발 시 1년). 끝.

인천광역시



수신자 인천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,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

주무관 임중선 택시관리담당 온윤희 택시화물과장 전결 2019. 8. 7. 서재희

협조자

시행 택시화물과-11717 (2019. 8. 7.) 접수

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, 인천광역시청 (구월동) / <http://www.incheon.go.kr>

전화번호 032-440-3828 팩스번호 032-440-8669 / absolutyou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"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합니다. 인천시민안전보험"